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2000년 11월 18일 제정
2004년 5월 7일 개정
2005년 1월 19일 개정
2005년 5월 13일 개정
2006년 6월 2일 개정
2008년 9월 26일 개정
2013년 10월 28일 개정
2014년 10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6조에 의한 회장 선출 절차와 방법 등 학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 1인은 회장이 지정한다. 기타 5인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로부터 120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후보의 등록 확인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선거 홍보물 발행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의 관리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7. 선거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8.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 결정

제 3 장 선거권, 선거인명부 및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매년 정기 총회 당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② 온라인 투표의 선거권은 연회비(차기 연도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③ 신입회원 및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투표자격을 부여한다
- ④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됐다가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까지 회원 자격을 회복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총회일 60일 이전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당해 연도 총회일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 회원에게 알려준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 15일전까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8조(피선거권) ①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1. 선거입후보 시 등록일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1항에 따른 정회원의 산정은 자격상실 및 회복 기간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구성)

1. 정관 제16조에 의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한다.
2. 전임회장단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 7인은 전임회장단의 호선에 의하여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은 이사들이 무기명으로 2인의 추천위원 후보를 천거하고, 천거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5인을 선정한다.

제 4 장 후보 등록 절차

제10조(후보자 선정)

1.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되고자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 후보자와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3인 이내의 후보를 선정한다.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 선정 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각 추천위원은 회장 추천 후보자 중에서 각 2인을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4. 최종 후보 추천자 선정은 5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으로 한다.
5. 1차 투표시 5표 이상을 득한 후보가 없거나 5표 이상을 득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2차 투표를 한다.
6. 2차 투표 방식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후보자 선정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한다.

제 5 장 선거 운동

- 제11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 제12조(선거 운동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며 누구든지 회원에게 전화 등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 본인은 예외로 한다.
-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 ④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기관이나 학교, 선거권자를 방문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도서 기증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3조(후보자 토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주관 하에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방송·전송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정견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후보자간 토론의 형식과 방법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14조(규정 위반의 제재)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 ⑥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박탈제안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재결정은 재직 이사의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선거 방법

제15조(선거 방식) ① 학회의 차기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출석 투표와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 출석투표 방식에 의한 찬성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다음 해 3월 말 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출석 투표 운영 방식) ① 출석 투표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출석 투표의 선거권은 당해 년도 선거권을 지닌 회원 가운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③ 출석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투표 운영방식) ① 온라인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총회일 3일전 오전 10시부터 총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②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행 과정 중 해킹,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출석 투표로 대체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후 그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봉인하고 출석투표 개표시 이를 개봉한다.

제18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임투표) ① 정관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② 전항에 따른 온라인투표는 지정된 날 오전 10시부터 2일 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해임을 위한 온라인투표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 (재선거) ① 취임 전에 사퇴하거나 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차기회장 당선자의 궐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선거 절차에 착수한다.

②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총회 일까지 차기회장 선출 재선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기 회장이 취임하지 못할 경우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및 취임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하며 차기회장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다.

④ 재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회장선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